

##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 안 번 호	969
------------	-----

제출년월일 : 2001.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안이유

- 안산시 초지동 소재의 안산공과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 즉 교육부에 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2010년을 목표로 하는 학교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지를 확보하여 교육공간의 질적 개선과 녹지확보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보전)로 계획하여 장래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 안산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된 대부동 지역의 도로 14개 노선중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시도 1, 2, 3호선과 선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노선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도로 일부분을 변경 입안 하고,
- 와동동사무소와 주차장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변경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59,791		459,791	10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77,976	감 77,976	-	0.0	학교시설 결정 으로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381,815	증 77,976	459,791	100.0	

### □ 시설 결정(변경)

#### ○ 교통운수시설(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신설	중로	1	75	20	주간선 도로	8,330	인천-안산시경계 (선재도)	동동 산17-2 (시화매립지)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5	15	주간선 도로	22,445	대로2-15	대로2-15	일반도로	

#### ○ 공공문화복지시설(공용의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용의청사	와동 275-1일원	-	5,575	5,575	

#### ○ 공공문화복지시설(학교)

구 分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학교	대학교	초지동 671번지 일원	381,815	77,976	459,791	자연녹지지역

### 3. 기대효과

- 교육공간의 질적 개선과 녹지확보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는 보전하며 장래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비하고,
-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 도로노선의 재조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하며, 사유권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지정예정인 용도지역과의 상호 보완적으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4. 관계법령 발췌내용

#### ○ 도시계획법

第22條(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을 立案하는 때에는 住民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都市計劃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전청취의전에 대한

안 산 시 의 회 의 견 서

안 산 시 의 회

## 안산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견에 대한

### 안 산 시 의 회 의 견 서

안산시 초지동 소재의 안산공과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 즉 교육부에 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2010년을 목표로 하는 학교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지를 확보하여 교육공간의 질적 개선과 녹지확보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보전)로 계획하여 장래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안산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된 대부동 지역의 도로 14개 노선중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시도 1, 2, 3호선과 선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노선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도로 일부분을 변경 입안하고

와동동사무소와 주차장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와동 275-1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할 경우 도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차량진출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민원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01년 5월 25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